

KIEP

오늘의 世界經濟

World Economy Update

제 03 -34 호 / 2003년 9월 9 일 발간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로드맵: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작성자: 이홍식 동북아경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hslee@kiep.go.kr ☎ 3460-1200】

김종혁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연구원

【jhkim@kiep.go.kr ☎ 3460-1193】

主要內容

- ▣ 최근 선진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로드맵” 발표는 매우 시의 적절함.
 - 특히 동북아시장을 선도할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도 전략적 외국인투자유치는 필요한 과제임.
- ▣ 정부의 획기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전략에도 불구하고 금융, 기술컨설팅 등 기업서비스 분야에서는 투자유치가 아직도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노조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근로자파견 업종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아울러 노동시장과 임금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재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세법 등의 법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바꾸어 자의성 및 부패관행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도록 하여야 함.
 - 셋째, 기업인수(M&A)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과세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기업인수 행위에 부수되는 법적 행위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수적인 과세관련 사안들을 기업인수 자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도록 조세정책이 정립되어야 할 것임.
 - 넷째,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와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학급기관의 내규와 관행의 불일치로 외국인투자자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다섯째, 향후 외국인투자유치는 단기적 양적팽창전략보다는 장기적 질적팽창을 위한 첨언이 요구됨.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 외국인투자유치의 효과와 필요성

-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무역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평가되기보다는 투자자의 성격, 투자유치국의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단순한 투자액뿐만 아니라 경영 및 기술을 포함한 생산요소의 이동이므로 경제적인 효과는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다국적 기업의 행태에 따라 달리 나타남.
-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는 안정적인 외환확보, 생산·고용 창출, 수출증대, 기술력 확충 및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기술이전 및 경쟁압력의 제고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 결과 해당산업의 성장을 촉진함.
 - 기존 기업의 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킴으로써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
-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는 GDP나 수출입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경제활동이나 수출입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

<표-1> 경제 전체의 상관관계 분석 (1981~2000)

	GDP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수출	수입
GDP	1.00	0.95	0.78	0.99	0.95
해외직접투자		1.00	0.65	0.94	0.93
외국인직접투자			1.00	0.79	0.65
수출				1.00	0.96
수입					1.00

자료: 하병기, 산업연구원, 2001

- 지난 5년 간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환안정, 고용창출, 생산성 향상 등 우리 경

제의 안정화 및 선진화에 크게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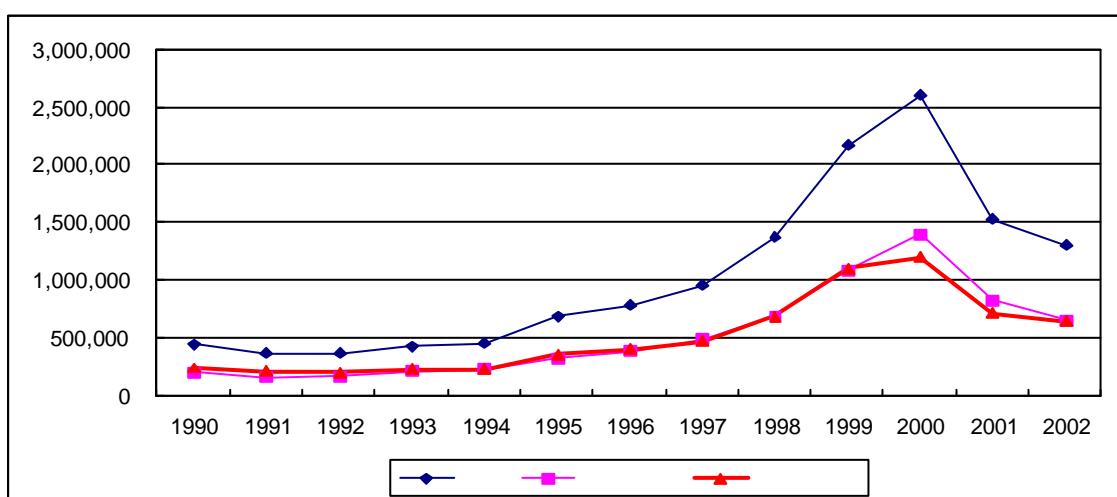
- 산업자원부의 분석에 따르면 97 ~ 99년 간 외국계 제조업체의 총생산액은 20조원, 고용은 5만1천명이었으며, 국내 제조업 생산증가에 약 44%를 기여하였음.
- 그러나 경제규모대비 FDI 유입액 증가 등 양적 성과에도 불과하고 FDI 수준이 경쟁국 등에 비해 여전히 낮고, 도입외자의 전략적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2 외국인투자환경 및 현황

1) 세계 외국인투자 동향 및 전망

- 199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외국인투자는 2000년을 기점으로 선진국의 경기 위축과 불확실성의 증대 등으로 2002년까지 급격히 감소하였음.

<그림-1>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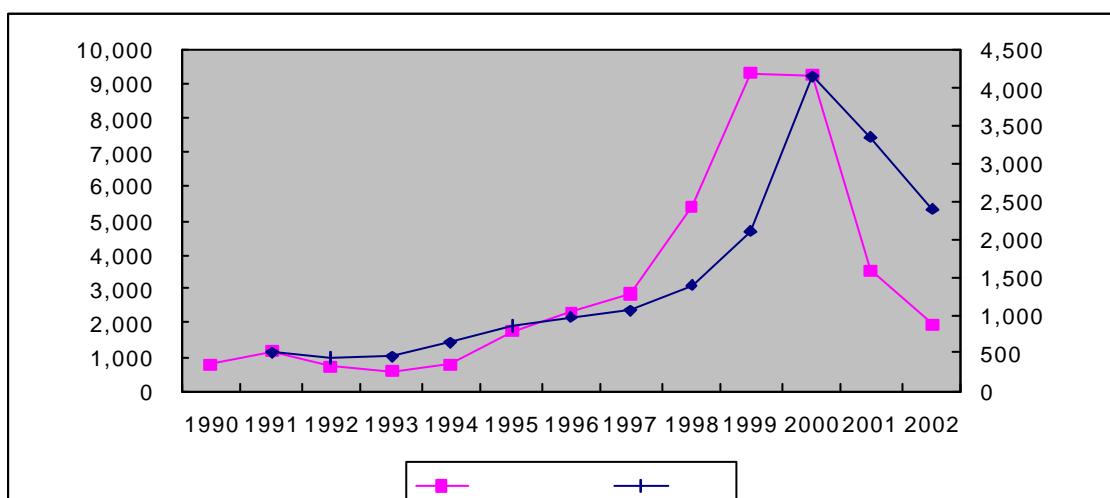
- 세계 전체의 FDI 유입 총규모는 2000년 1조 3,929억불에서 2001년 8,238억불로 41% 감소하였고 2002년에는 6,511억불로 21% 감소하였음.

- 그러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부터 세계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과 더불어 세계 전체의 외국인직접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3년 하반기부터 경기둔화가 극복되면서 세계 FDI 규모도 점증할 것으로 예상됨 (2003년 6,546억불, 2004년 8,335억불, 2007년 1조1,549억불).
 - 또한 개도국은 고성장, 규제완화 등으로 인하여 이미 투자매력이 있는 데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외자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향후 세계적인 FDI 추세는 기존의 선진국 중심에서 중국, 동유럽과 함께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 신흥국가들이 새로운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2) 국내 외국인투자 동향

-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였던 외국인직접투자가 최근 들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2> 한국의 외국인투자의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건)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산업자원부

- 2002년 외국인투자는 전년대비 44.1% 감소한 1,972백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산업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2/4분기 외국인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와 비해 41.1% 감소한 1,553백만 달러를 기록.
 - 2000년 이후 외국인투자의 부진은 전 세계적 경기침체라는 대외적 요인과 국내 대형 M&A물량 감소와 노사갈등과 같은 대내적 요인에 기인함.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표한 2003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이 0.483으로 전체 140개 국가 가운데 92위를 차지함.

- 특히 2002년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전년에 비해 16억 달러 가까이 감소하여 FDI가 가장 크게 감소한 30개국에 포함됨.
- KOTRA와 산업자원부의 외국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에서 노사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고생산비용, 기술력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북한핵문제 등 정치사회적 요인들이 외자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2> 외국인투자시 장애요인

	노사문제	행정규제	고비용	북핵문제
산자부조사	32%	20%	14%	8%
KOTRA조사	25%	13%	16%	16%

- 이러한 외국인투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 지역본부신설, 공장설립 등에 의한 Greenfield 투자가 활발하여 외국인투자의 질적 수준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투자로는 하이닉스 LCD 사업부, 대우자동차 매각 및 「BOE 하이디스」, 「GM 대우자동차 기술」 신설 등이 있음.

- 하이월 R&D, 페어차일드 R&D, 오드펠아시아 물류본부 등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과 미국 백스젠의 세계최초 AIDS 백신 생산공장 설립, 독일 머크로부터 최첨단 LCD 액정 제조공장설립 등 외국인투자의 질적 수준은 향상되고 있음.

3.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로드맵 내용 및 의미

1) 경쟁국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가. 외국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외국 기업의 신·증설 투자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현금지원제도(Cash Grant)를 2004년 1월 1일부터 도입.
- 외국기업이 첨단산업에 1,000만불 이상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500만불 이상을 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할 경우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현금지원제도를 신설·운용함.
- 보다 많은 투자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감면제도를 확대 개선함.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제조업은 투자금액 5,000만 달러 이상에서 3,000만불 이상으로 조정하는 한편 감면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함.
 - 조세감면대상 투자금액을 대폭 하향조정하여 제조업의 경우 1,000만불(총전 3,000만불) 이상 투자시 5년 간 감면(3년 100%, 2년 50%).
 - 외국인 임직원들에게는 총급여액에 단일소득세율(17%)을 적용하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5년) 적용기간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함과 동시에 임대료 전액 감면.
 - 외국인투자지역(임대료 감면률 100%) 지정요건을 현행 1개업체 5천만 달러 이상에서 업종이 다른 여러 업체를 합쳐 전체 3천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함.
 - 민간사업자가 조성한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분양가 차액보조 또는 임대료 감면 혜택 부여.
- 나. 외국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기업 노사분규 전담자 지정.
 - 「Invest KOREA」에 노동부 파견관(4급 신규직원)을 임명함과 동시에 노동부·경찰청·검찰청 등에도 외국투자기업 노사분규 전담자를 지정하여 유관기관이 공조하여 단계적으로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함.
 - 금융 및 외환 분야의 경영환경을 대폭 개선함.
 - 외국투자기업과 본사간의 모든 외환거래를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000만불 이상 투자기업은 한국은행 신고대신 거래은행 신고로 대체함.
 - 거래기간이 짧아 외국투자기업과 국내금융기관과의 신용대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점을 개선하여 신용대출시 외국투자기업 본사의 신용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함.

다.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고 외국인학교를 설립함.

-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 경남 진사공단, 판교신도시 등에 국제수준의 외국인 학교를 설립함.
- 임대료 감면, 내국인 입학자격 요건 완화(해외거주: 5년→3년), 외국인학교 재 단에 대한 기부금의 捐費인정 등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

□ 외국인투자가의 교육, 주거 등 고충사항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이 「Invest KOREA Plaza」를 건립하여 외국인기업 활동의 중심으로 활용.

2) 실효성 있는 One-Stop 서비스체제 구축

□ 기존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며, 명칭에 있어서도 대 외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Invest KOREA」로 변경함.

- 「Invest KOREA」의 단장은 외국인투자 전문가로 국제공모를 통해 채용함으 로써 명실상부한 외국인 투자지원센터로써 역할을 도모함.

□ 투자검토 단계에서부터 최종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 One-Stop 서비스를 위해 PM(Project Manager) 제도를 도입.

- PM이 한 프로젝트를 전담하여 투자상담부터 사업개시까지 투자의 모든 과정 을 밀착지원하고, 각종 인·허가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도록 함으로 쟠 투자자는 PM 한 명만을 상대로 투자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 게 함.

3) 투자유치 활동 강화

□ 대통령의 강력한 투자유치 리더쉽 발휘

- 대통령의 외국인투자유치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주요 투자 유치 대상기업의 CEO를 직접 만나며, 일년에 두 번씩 대통령 주재 “외국인투

자유치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함.

□ 투자유치 포상금지급제도 도입

- 투자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나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투자유치 일선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킴.

4. 향후 과제

- 최근 선진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안정화, 생산성증가,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로드맵” 발표는 매우 시의 적절함.
- 특히 동북아시장을 선도할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도 전략적 외국인투자유치는 필요한 과제임.
- 정부의 획기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전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투자유치환경은 물리적 시설 인프라 면에서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금융, 기술컨설팅 등 기업서비스 분야에서는 투자유치가 아직도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외국인직접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업 노사분규 전담자” 제도의 도입은 환영할 만함. 그러나 더 나아가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노조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근로자파견 업종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아울러 노동시장과 임금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기업이 고용과 성과급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고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고용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음. 이외에도 현재 법으로 강제규정하고 있는 휴가제도(연월차, 여성특별휴가 등)를 노사간 자율적 합의에 의한

계약에 따라 이행되도록 해야 함.

- 둘째,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조세제도를 투자자에게 우호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투자유치에 있어 매우 중요함. 현재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세법 등의 법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바꾸어 자의성 및 부패관행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도록 하여야 함. 이를 통해 조세가 또 다른 규제라는 인상을 지우게 하는 질적인 측면의 노력은 양적인 측면과 함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셋째,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기업인수(M&A) 가 완전히 허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었음. 그러나 계열기업내 복잡한 지분구조, 기업정보의 불투명성, 기업지배구조의 부실, 상호지급보증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M&A는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하였음. 기업인수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과세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기업인수 행위에 부수되는 법적행위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수적인 과세관련 사안들을 기업인수 자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도록 조세정책이 정립되어야 할 것임.
- 넷째, 외국인투자 관계법령에 따르는 부속조항 및 관행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즉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와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하급기관의 내규와 관행의 불일치로 외국인투자자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향후 새롭게 시행될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과 관련법규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내부규정을 서둘러 정비하여야 할 것임.
- 다섯째, 향후 외국인투자유치는 단기적 양적 평창전략보다는 장기적 질적 평창을 위한 접근이 요구됨. 차세대 신성장동력의 유지·개발 및 산업첨단화를 위하여 기존산업 기능의 심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산업클러스터, 기술인력 양성, 기술혁신을 유도할 외자를 중점적으로 유치하여야 함.
- 여섯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하여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일반 국민들의 외국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유도하여야 함. 현재 일본 JETRO는 해외에 80개의 무

역관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KOTRA는 총 115개의 무역관(국내에 13개 해외에 102개)을 두고 있어 해외홍보에 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외국인 투자가 국부유출이냐 아니냐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전략적 외국인투자유치는 동북아경제중심 실현과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임을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임.

<표-3>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전략

항목	세부내용	비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조세감면 확대 (외국인투자지역지정 하한선 조정) (조세감면대상 투자금액 하향조정) (외국인 임직원 대상 단일소득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5,000만달러→3,000만달러) 물류(3,000만달러→1,000만달러) 제조업 1,000만달러 이상 투자시 5년간 조세감면 17% 적용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기간 5년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임대료 전액 감면 지정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업종 합계 3,000만달러 이상 (기존에는 1개업체 5,000만달러)
	현금보조제도(케시 그랜트)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만달러 이상(R&Dsms 500만 달러) 공장신·증설시 현금보조 · 임대료, 공장 건축비, 설비투자비, 고용 훈련보조금 지급
외국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노사문제 특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경찰, 검찰 등에 전담직원 지정 · 인베스트코리아에 노무상담 기능 강화
	외환거래시 1,000만달러 이상 투자는 거래은행 신고로 대체	-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 학교 확충사업 중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 수도여고, 경남 진사공단, 판교, 용산기지 등에 외국인학교 건설 · 내국인 입학자격 해외거주 3년으로(기존5년) · 외국인학교 재단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
	외국인 의료시설 확충	-
원스톱 서비스 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기업마다 전담 직원 (프로젝트 매니저) 배치 · 민원 일괄 처리제 강화 ·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확대개편 	-
투자유치 활동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이 다우코닝, 스미토모 등 다국적기업 CEO 초청 ·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 부처별 투자유치 실적 국무회의 보고 	-